

# 조세에 대한 일부 정책안내를 업데이트로

2017년 10월



# Contents

이번 뉴스중엔 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 은 고객님에게 다음 조세에 대한 일부 정책안내를 업데이트로 해드립니다.  
VAT의 등록과 계산방법 전환업무중 행정절차의 개혁:



VAT의 등록과 계산방법 전환업무중  
행정절차의 개혁.



수출,수입권한진행을 위한 제출기업의  
VAT 에 대한 의무.



세금채무 강제시간중에 영수증사용을  
무효영수증의 통보조치로 한다.



투자날전의 단계에 배당된 주식과  
증권 판매 소득금의 이자항목에 대한  
법인소득세.



2017/5/1일이후 종료된 재정년도에  
대한 연결거래의 신고 양식.

# 1. VAT의 등록과 계산방법 전환업무중 행정절차의 개혁

재정부- 세총국은 2017/9/12월에 문서 제4253/TCT-CS를 최근에 발급해서 문서 제 93/2017/ TT-BTC호 의 일부 새로운 점을 소개해준다, 그에 따라:

VAT 계산 방법의 확정은 세무기관에 보내준 영업소들의 VAT계산 서류에 근거한다, 즉:

- 영업소가 공제방법의VAT적용의 등록을 하면 VAT계산신고서의 양식 01/GTGT, 02/GTGT 을 세무기관에 보낸다.
- 영업소가 직접 계산방법의VAT적용의 등록을 하면VAT계산신고서의 양식 03/GTGT, 04/GTGT를 세무기관에 보낸다 .

본 문서는 또한 영업소가 공제방법의VAT적용의 양식06/GTGT 삭제를 새 창업 영업소와 VAT부담의 과세 매출금이1억 이하인 경우와 VAT계산방법 전환시의 영업소에 대한 적용한다.

# 2. 수출,수입권진행을 위한 제출기업의 VAT 에 대한 의무

2017/9/12일에 세총국은 문서 제4107/TCT-KK를 발급해서 수출,수입권 진행을위한 제출 기업의 세금 신고 의무의 관리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으로 다음 같다:

- 제출 기업은 수출위한 생산활동에 대한 VAT 납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활동을 세무기관 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.
- 그러나, 수출용 생산 활동외에 기업은 상품구매활동과 베트남에 물품 매매에 관련된 활동 들을 위한 허가되기 때문에 그활동들이 VAT부담 대상에 속하며 제출 기업은 국내세무 기 관에 신고해야 하고 베트남에 매매활동에 관련된 매출금, 비용을 따로 결산장부에 진행해 야 하고 생산활동에 같이 결산하지말고 동시에 수출,수입권에 따른 수입,수출물품의 보관 을 위한 개별장소에 한다.

우리의 조사에의 하면, Hà Nội 세무서는 한 으떤기업에 구체적으로 문서 제45692/CT-HTr 호의 2016/07/08일에 베트남 내국에 상품수입, 수출권한을 받은시에 통지 제 80/ 2012 TT-BTC호의 11조에 규정된 세무신고정보를 지금, 문서제95/2016/TT-BTC호의 11,과 12조로 변경으로 적용하기를 안내해 준다.

그에 따라, 그런 기업은 베트남에 물건 매매 활동의 규정에 대한VAT 신고, 납세를 해야 한다.



### 3. 세금채무 강제 시간중에 영수증사용을 무효영수증의 통보조치로 한다

2017년 9월 11일에 세총국은 문서 제4094/TCT-CS호를 발급해서 영수증에 관한 행정 위반 처분을 다음 처럼 발표한다:

납세자는 세금채무의 강제시간중의 경우에 "영수증의 사용 무가치"의 방법으로 조치하면, 원칙상 납세자가 영수증을 사용할수 없다. 만약 납세자는 그 강제시간중에 영수증 사용하면 불합법 영수증 사용 행위로 본다.

### 4. 투자날전의 단계에 받은주식과 증권 판매 소득금의 이자항목에 대한 법인소득세

2017년 9월 11일에 재무부-세총국은 최근에 문서 제4094/TCT-CS호를 발급해서 기업이 투자 날전에 받은 주식과 증권 매출금의 예금 이자를 받은 경우들중에 법인소득세의 진행 안내를 다음 처럼 한다:

- 증권매각의 현금 수금과 그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 그금액의 이자소득이 재정 기타 수금항목이고 재정부의 문서 제219/2013/TT-BTC호의5조, 1항에 규정된 VAT계산, 납세되지 않는 경우에 속하고 그 수금항목에 대한 VAT영수증 발급도 필요없다.
- 투자날전에 받은 주식인 경우에 투자항목의 가치감소로 기록되고 주식받은 권확증시점에 그런 전부 주식에 대한 법인소득세의 면세소득으로 명기된다.



## 5. 2017/5/1일(의령서 제20/2017/NĐ-CP호의 발효일 임) 이후 종료된 재정년도에 대한 연결거래의 신고 양식.

연결거래 있는 기업에 대한 세금 관리에 대한 의령서 제20/2017/NĐ-CP호 (“의령20”) 과 문서 제41/2017/TT-BTC (“문서41”)들중의 아직 불투명점은 바로 효력시점이다 (2문서의 효력날이 다 같은 2017/5/1일 임). 현재, 각 세무소와 불 정식적 정보교환에 의하면 의령20과 문서41의 새 규정 적용을 2017/5/1일이후의 재정년도종료된 기업들에 적용되기로 이해된다.

그럼으로, 그 이해에 따라, 2017/5/1일(예:2017/6/30일 재정년도 종료)이후의 재정년도종료의 기업들인 경우엔 의령20과 문서41일의 새 규정들을 적용하고 그중 하나는 연결거래양식 (의령 20 의 양식1)을 그전의 부록03-7/TNDN대신으로 작성, 제출한다고 본다.



**의령20과 문서41의 새 규정  
적용을 2017/5/1일이후의  
재정년도종료된 기업들에  
적용되기로 이해된다.**

그런 문제 관련해서, Ha Noi세무서는 문서 제63347/CT-TTHT호를2017/9/21일에 발급 해서 2017/6/30일재정년도 종료의 기업인 경우에 의령20과 문서41의 새 규정적용을 적용 해야하 고 양식 No.1로 작성, 신고한다.

그렇지만 우리의주의로서 현시점까지 세총국의 “HTKK”계산 Software엔 양식 No.1작성지원을 하지않고 때문에 기업은 새규정적용의 경우에 양식 No1에 기재하면 Hard File로 해야한다.



**하지않고 때문에 기업은  
새규정적용의 경우에 양식  
No1에 기재하면 Hard File로  
해야한다**

그렇지만, Ha Noi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의 기업들에게 조세관리기관과 직 합의해서 세무서의 요구 방법을 매 지방의 이해와 진행이 서로 다르기 문에 재 확인( 양식No.1혹은 부록 03-7/ TNDN을 사용하는지)을 권고하고 싶다.

**고객님은 조세관련문재제혹은 법률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 
자문들을 필요하시면 우리Grant Thornton 의 전문가들하고  
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.**

# Contacts

본 소식통은 오직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.

고객님은 본소식통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더이상 Grant Thornton Vietnam(주)의 협조를 받으려시면 우리 전문가하고 서심없이 연락해주시기를 바란다

고객님은 상기 소식통을 DOWNLOAD 을 하고 싶면 우리의 다음 web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 된다:

[grantthornton.com.vn](http://grantthornton.com.vn)

## Head Office in Hanoi

18<sup>th</sup> Floor,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 
106 Hoang Quoc Viet Street, Cau Giay District, Hanoi, Vietnam  
T + 84 24 3850 1686  
F + 84 24 3850 1688

## Ho Chi Minh City Office

14<sup>th</sup> Floor, Pearl Plaza  
561A Dien Bien Phu Street, Binh Thanh District, Ho Chi Minh City, Vietnam  
T + 84 28 3910 9100  
F + 84 28 3910 9101

### Hoang Khoi

Tax Partner  
National Head of Tax  
D +84 24 3850 1618  
E [khoi.hoang@vn.gt.com](mailto:khoi.hoang@vn.gt.com)

### Nguyen Dinh Du

Tax Partner  
D +84 24 3850 1620  
E [du.nguyen@vn.gt.com](mailto:du.nguyen@vn.gt.com)

### Nguyen Hung Du

Tax Partner  
D +84 28 3910 9231  
E [hungdu.nguyen@vn.gt.com](mailto:hungdu.nguyen@vn.gt.com)

### Kaoru Okata

Director – Japanese Desk  
D +84 24 3850 1680  
E [kaoru.okata@vn.gt.com](mailto:kaoru.okata@vn.gt.com)

### Valerie – Teo Liang Tuan

Tax Director  
D +84 28 3910 9235  
E [valerie.teo@vn.gt.com](mailto:valerie.teo@vn.gt.com)

### Tran Hong My

Tax Director  
D +84 28 3910 9238  
E [hmy.tran@vn.gt.com](mailto:hmy.tran@vn.gt.com)

### Masato Karoji

Director – Japanese Desk  
D +84 28 3910 9135  
E [masato.karoji@vn.gt.com](mailto:masato.karoji@vn.gt.com)

### Tran Nguyen Mong Van

Tax Director  
D +84 28 3910 9233  
E [mongvan.tran@vn.gt.com](mailto:mongvan.tran@vn.gt.com)

